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5. 5. 10.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개정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94.12.31공포 대통령령)

3. 주요골자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컵. 접시. 용기.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등의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하고,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를 억제함
(안 제4조)

나. 목욕장. 숙박업소에서 1회용면도기. 1회용칫솔. 치약. 1회용삼푸. 린스등의 1회용품의 무상제공을 억제함.(안 제4조)

다. 백화점. 대형점. 도소매센타 쇼핑센타에서 합성수지제백. 종이백을 줄이기 위하여 별도의 판매장소 또는 배부장소를 설치토록하고 생선. 정육. 채소등과 같이 제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여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음식료품외의 제품을 판매할때는 합성수지제백의 사용을 규제함.(안 제4조)

라.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임대업 및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및 기타 관련사업에 대하여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를 억제함.(안 제4조)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과태료부과 기준) 제 1항 “별표 1”을 별지“별표 1”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반 이 후		1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반 이 후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160제곱미터 이상인 집단급식소	1,500	2,500	3,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소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 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이수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 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 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때	300	500	1,000	(현행과 같음)	
	< 신 설 >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과 객석면적이 33 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 회용품 이수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현		행			개			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 장업						(다). (현행과 같음)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가족탕.한증막)	1,000	2,000	3,0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터키탕.복합 목욕탕)	1,500	2,500	3,000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 업종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 업종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의한 콘도미니 엄업	1,500	2,500	3,000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마.	도.	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소핑센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1	2	3	마.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소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현행과 같음)	1	2	3
바.	도.	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소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자가 포장용기 재사용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2	3	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사용제품의 교환.판매대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현행과 같음)	1	2	3	

현		행			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반	2차반	3차위반 이후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반	2차반	3차위반 이후
사. 도. 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화용제품의 교환 판매매 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 명령을 이 행 하지 아니한 때 < 신 설 >	2,000	2,000	2,500	3,000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 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 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 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 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 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 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	1,500	2,500	3,000
						1,000	2,000	3,000

현		행			개			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반	2차반	3차위반		1차반	2차반	3차위반
2.	(생략)						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생략)					(현행과 같음)

(주) 1. ~ 3.(생략)

(주) 1. ~ 3.(현행과 같음)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비 고
	1 차 위반	2 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p>1. 다음 업소에서 자원의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법 제15조 제5항)</p> <p>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때</p> <p>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p> <p>다.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p>	1,000	2,000	3,000	
	300	500	1,000	
	1,500	2,500	3,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비 고
	1 차 위반	2 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000	2,000	3,0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마.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 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때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바. 도. 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 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 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 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 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사. 도. 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 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아.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 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자.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	1,000	2,000	3,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비 고
	1 차 위반	2 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p>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 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2.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6조 제 2항)</p>				
<p>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p>	300	500	1,000	
<p>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p>	800	900	1,000	

검 토 보 고 서

□ 조 례 명

-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주 요 내 용

1. 식품 접객업소의 1회용품 종류 범위 추가 (안 제 4조 별표 1 가, 다, 바, 자항)

- 현행 :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 개정 : 합성수지로된 도포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추가

2. 1회용품 사용 자제 대상업소 확대 및 과태료부과 신설 (안 별표 1 나항)

- 현행 : 접객업소 면적 66제곱미터 이상업소 적용
- 개정 : 접객업소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업소로 확대 적용
(과태료 신설 → 1차 위반 300천원, 2차 500, 3차 1,000)

3. 1회용품 사용 억제 숙박업소 범위 확대 (안 별표 1 마항)

- 현행 : 30일 이상인 숙박업소에 대해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 개정 : 7일 이상인 숙박업소로 확대

□ 개 정 사 유

-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 14492호) 및 동 시행규칙이 '94. 12. 31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을 개정

□ 검 토 결 과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사전 입법예고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고,

○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도 개정된 상위법령을 근거로 각종 규정 및 용어를 일치되게 개정코자 한 것으로 법령저축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사료됨.

○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도 개정된 상위법령을 근거로 각종 규정 및 용어를 일치되게 개정코자 한 것으로 법령저축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